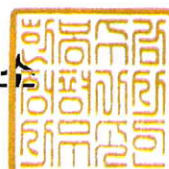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 | |
|--------|-----------------------|
| 건명 | 조현찬 소유물건(2025타경30667) |
|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
| 감정서 번호 | H2503-102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한봉수

한봉수



| | | | | |
|--------------------------|-----------------------------------|------------|------------|------------|
| 감정평가액 | 일역사천이백팔십오만팔천팔백원정 (₩142,858,800.-) | | | |
|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 감정평가목적 | 법원경매 | |
| 제출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3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조현찬 (2025타경30667) | 감정평가조건 | - | |
| 목록표시 근거 기타 참고사항 | 귀제시목록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 | 2025.03.17 | 2025.03.17 | 2025.03.24 |

| 감정평가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토지 | | 69,917 | 토지 | 69,917 | - | 142,858,800 |
| 합계 | | | | | | ₩142,858,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 1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울리 | 산258-2 | 임야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30,248 | 30,248 | 2,100 | 63,520,800 | |
| 2 | 상 동 | 산259 | 임야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39,669 | 39,669 | 2,000 | 79,338,000 | |
| | 합 계 | | | 이 | 하 | 여 | 백 | ₩142,858,8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울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3월 17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3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및 본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감정평가의 조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기타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측량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1, 2는 두 개의 용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며,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와 유사한 통상의 광평수토지에는 관리상태 및 접근의 곤란 등으로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 기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m ²)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형상지세 |
|----|-------------------------------|----|---------------------|---------------|------|------------|
| 1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258-2 | 임야 | 30,248 | 농림지역, 생산관리 | 자연림 | 부정형 급경사 |
| 2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259 | 임야 | 39,669 | 농림지역, 생산관리 | 자연림 | 부정형 급경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 기호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공시지가 (원/㎡) |
|----|--------------|--------|----|------|------|------|---------|------------|
| A | 명석면 외율리 산296 | 19,041 | 임야 | 조림 | 농림지역 | 맹지 | 부정형 급경사 | 741 |
| B | 명석면 외율리 산248 | 595 | 임야 | 자연림 | 생산관리 | 맹지 | 부정형 급경사 | 826 |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5년 01월 01일임.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표준지 | 비고 |
|-----|---|
| A | 경상남도 진주시 (25.01.01~25.03.17) (농림) 2025.01.01 ~ 2025.01.31 : -0.013 $(1 - 0.00013) * (1 - 0.00013 * 45/31)$ ≒ 0.99968 |
| B | 경상남도 진주시 (25.01.01~25.03.17) (생산관리) 2025.01.01 ~ 2025.01.31 : 0.061 $(1 + 0.00061) * (1 + 0.00061 * 45/31)$ ≒ 1.00150 |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지역요인 비교

|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 지역요인 비교치 |
|-------------------------------------|----------|
|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1.000 |

(4)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접근 조건 | 교통의 편부 등 | 인근 역과의 접근성 |
| | |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
| | |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
| | |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
| | |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
| 자연 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 | 지세, 방위 등 | 표고 |
| | | 방위 |
| | | 경사 |
| | | 경사면의 위치 |
| | | 경사의 굴곡 |
| | 토양, 토질 | 토양, 토질의 양부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조장의 정도 |
| | |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
| | | 기타규제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 개별요인 비교

| 기호 | 표준지 | 가로 | 접근 | 환경(자연) | 획지 | 행정적 |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
|----|-----|----|------|--------|----|------|------|----------|
| 1 | A | — | 1.00 | 1.00 | — | 1.00 | 1.00 | 1.000 |
| | B | — | 0.90 | 1.00 | — | 1.00 | 1.00 | 0.900 |
| 2 | A | — | 1.00 | 1.00 | — | 1.00 | 1.00 | 1.000 |
| | B | — | 0.90 | 1.00 | — | 1.00 | 1.00 | 0.900 |

기호 1, 2 : 비교표준지A와 대체로 유사하며, 비교표준지B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 28) 및 대법원판례(98두6067, 92누16300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지 목 | 기준시점 | 평가목적 | 토지단가(원/㎡) | 비고 |
|-----|--------------------|------|-----|------------|------|-----------|----|
| (1) | 명석면 신기리 산*** | 농림지역 | 임야 | 2024.10.08 | 소송 | 2,000 | - |
| (2) | 명석면 신기리 산*** | 생산관리 | 임야 | 2024.10.08 | 소송 | 3,000 | - |
| (3) | 명석면 외율리 산*** | 농림지역 | 임야 | 2023.11.27 | 담보 | 2,000 | - |
| (4) | 명석면 외율리 산*** | 생산관리 | 임야 | 2023.11.27 | 담보 | 3,000 | -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나) 인근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지 목 | 거래시점 | 토지단가(원/㎡) | 비고 |
|----|-----------------------|-------------|------------|-----------|----|
| #1 | 명석면 남성리 산*** | 농림지역 임야 | 2024.02.17 | 2,022 | - |
| #2 | 명석면 오미리 산***_** | 생산관리 임야 | 2021.03.16 | 6,398 | -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가)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기준 표준지가격} \quad (\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quad (\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다)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1)

| 구분 | 단 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산출단가 | 격차율 | 보정치 결정 |
|-------------------------------|---------------------------------------|---------|-----------|-------|-------|-------|--------|
|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 2,000 | 1.00176 | 1.000 | 0.900 | 1,803 | 2.433 | 2.43 |
|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 741 | 0.99968 | — | — | 741 | | |
| 시점수정 | 경상남도 진주시 농림지역 2024.10.08 ~ 2025.03.17 | | | | | | |
| 지역요인 |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 | | | | |
| 개별요인 | 가로조건 | 접근조건 | 자연(환경) 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 격차율 |
| | — | 0.90 | 1.00 | — | 1.00 | 1.00 | 0.900 |
|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에서 열세함.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비교표준지 B / 사례 기호 (2)

| 구분 | 단 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산출단가 | 격차율 | 보정치 결정 |
|-------------------|---------------------------------------|---------|-----------|-------|-------|-------|--------|
|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 3,000 | 1.00400 | 1.000 | 1.000 | 3,012 | 3.642 | 3.64 |
|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 826 | 1.00150 | — | — | 827 | | |
| 시점수정 | 경상남도 진주시 생산관리 2024.10.08 ~ 2025.03.17 | | | | | | |
| 지역요인 |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 | | | | |
| 개별요인 | 가로조건 | 접근조건 | 자연(환경) 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 격차율 |
| | — | 1.00 | 1.00 | — | 1.00 | 1.00 | 1.000 |
| 표준지는 사례와 대체로 유사함. | | | | | | | |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 기호 | 비교표준지 |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산출단가 (원/㎡) | 시산가액 (원/㎡) |
|----|--------------------|------------|---------|-------|-------|---------|------------|------------|
| | 기호 | 공시지가 (원/㎡) | | | | | | |
| 1 | A | 741 | 0.99968 | 1.000 | 1.000 | 2.43 | 1,800 | - |
| | B | 826 | 1.00150 | 1.000 | 0.900 | 3.64 | 2,710 | - |
| | 용도지역면적비율 가중평균단가 산출 | | | | | | 2,137 | 2,100 |
| 2 | A | 741 | 0.99968 | 1.000 | 1.000 | 2.43 | 1,800 | - |
| | B | 826 | 1.00150 | 1.000 | 0.900 | 3.64 | 2,710 | - |
| | 용도지역면적비율 가중평균단가 산출 | | | | | | 1,964 | 2,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1,#2 를(을)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2) 사정보정

|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 사정보정치 |
|-----------------------------|-------|
|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 1.000 |

(3)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거래사례 | 비 고 |
|------|---|
| #1 | 경상남도 진주시 (24.02.17~25.03.17) (농림) 2024.02.01 ~ 2024.02.29 : 0.026 2024.03.01 ~ 2024.03.31 : -0.006 2024.04.01 ~ 2024.04.30 : -0.052 2024.05.01 ~ 2024.05.31 : 0.096 2024.06.01 ~ 2024.06.30 : -0.023 2024.07.01 ~ 2024.07.31 : 0.036 2024.08.01 ~ 2024.08.31 : 0.057 2024.09.01 ~ 2024.09.30 : 0.024 2024.10.01 ~ 2024.10.31 : 0.027 2024.11.01 ~ 2024.11.30 : 0.065 2024.12.01 ~ 2024.12.31 : 0.122 2025.01.01 ~ 2025.01.31 : -0.013 $(1 + 0.00026 * 13/29) * (1 - 0.00006) * (1 - 0.00052) * (1 + 0.00096) * (1 - 0.00023) * (1 + 0.00036) * (1 + 0.00057) * (1 + 0.00024) * (1 + 0.00027) * (1 + 0.00065) * (1 + 0.00122) * (1 - 0.00013) * (1 - 0.00013 * 45/31)$ $= 1.00326$ |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거래사례 | 비 고 |
|------|--|
| #2 | 경상남도 진주시 (21.03.16~25.03.17) (생산관리) 2021.03.01 ~ 2021.03.31 : 0.128 2021.04.01 ~ 2021.04.30 : 0.108 2021.05.01 ~ 2021.05.31 : 0.108 2021.06.01 ~ 2021.06.30 : 0.114 2021.07.01 ~ 2021.07.31 : 0.072 2021.08.01 ~ 2021.08.31 : 0.088 2021.09.01 ~ 2021.09.30 : 0.077 2021.10.01 ~ 2021.10.31 : 0.058 2021.11.01 ~ 2021.11.30 : 0.120 2021.12.01 ~ 2021.12.31 : 0.128 2022.01.01 ~ 2022.12.31 : 1.494 2023.01.01 ~ 2023.12.31 : 0.438 2024.01.01 ~ 2024.12.31 : 0.857 2025.01.01 ~ 2025.01.31 : 0.061 $(1 + 0.00128 * 16/31) * (1 + 0.00108) * (1 + 0.00108) * (1 + 0.00114) * (1 + 0.00072) * (1 + 0.00088) * (1 + 0.00077) * (1 + 0.00058) * (1 + 0.00120) * (1 + 0.00128) * (1 + 0.01494) * (1 + 0.00438) * (1 + 0.00857) * (1 + 0.00061) * (1 + 0.00061 * 45/31)$ ≙ 1.03937 |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 지역요인 비교치 |
|--------------------------------------|----------|
|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1.000 |

(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기호 | 거래사례 | 가로 | 접근 | 환경 (자연) | 획지 | 행정적 |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
|----|------|----|------|------------|----|------|------|-------------|
| 1 | #1 | — | 1.00 | 1.00 | — | 1.00 | 1.00 | 1.000 |
| | #2 | — | 0.70 | 0.50 | — | 1.01 | 1.00 | 0.354 |
| 2 | #1 | — | 1.00 | 1.00 | — | 1.00 | 1.00 | 1.000 |
| | #2 | — | 0.70 | 0.50 | — | 1.01 | 1.00 | 0.354 |

기호 1, 2 : 거래사례#1과 대체로 유사하며, 거래사례#2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하며 행정적조건(사례일부접도구역)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 기호 | 거래사례 |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출단가 (원/㎡) | 시산가액 (원/㎡) |
|----|--------------------|---------------|----------|----------|----------|----------|---------------|---------------|
| | 기호 | 토지단가 (원/㎡) | | | | | | |
| 1 | #1 | 2,022 | 1.000 | 1.00326 | 1.000 | 1.000 | 2,029 | - |
| | #2 | 6,398 | 1.000 | 1.03937 | 1.000 | 0.354 | 2,354 | - |
| | 용도지역면적비율 가중평균단가 산출 | | | | | | | 2,149 |
| 2 | #1 | 2,022 | 1.000 | 1.00326 | 1.000 | 1.000 | 2,029 | - |
| | #2 | 6,398 | 1.000 | 1.03937 | 1.000 | 0.354 | 2,354 | - |
| | 용도지역면적비율 가중평균단가 산출 | | | | | | | 2,08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 기호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 비고 |
|----|-----------------------|-----------------------|----|
| 1 | 2,100 | 2,100 | - |
| 2 | 2,000 | 2,100 | - |

(2)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 기호 | 평가단가(원/㎡) | 면적(㎡) | 감정평가액(원) | 비고 |
|----|-----------|--------|---|----|
| 1 | 2,100 | 30,248 | 63,520,800 | - |
| 2 | 2,000 | 39,669 | 79,338,000 | - |
| 합계 | - | 69,917 | 142,858,8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의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구분 | 감정평가액(원) |
|-----|---|
| 토 지 | 142,858,800  |

2. 기타 참고사항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울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측으로 일부 비포장 임도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토석채취제한지역(2012-08-22)〈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토석채취제한지역(2012-08-22)〈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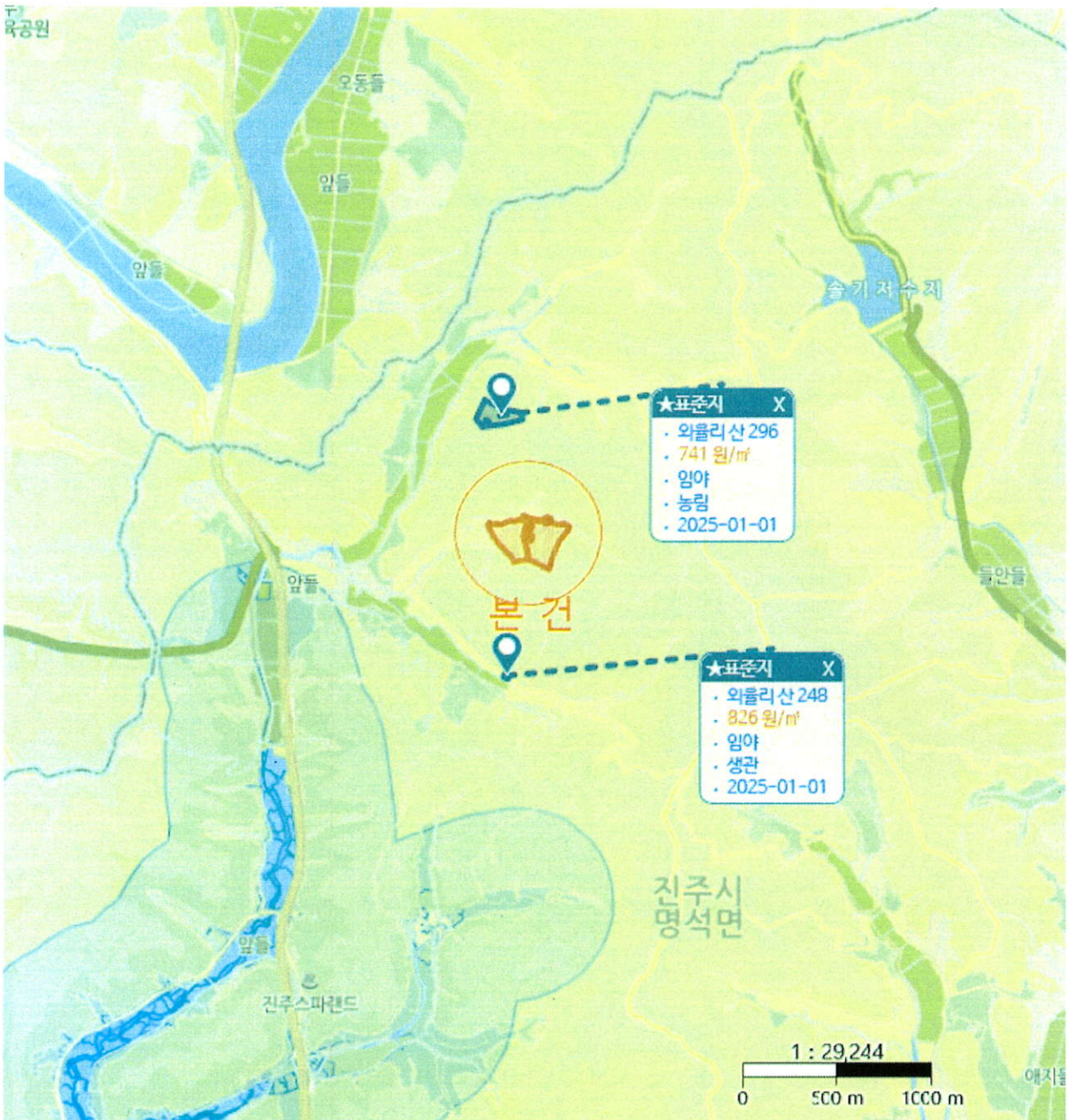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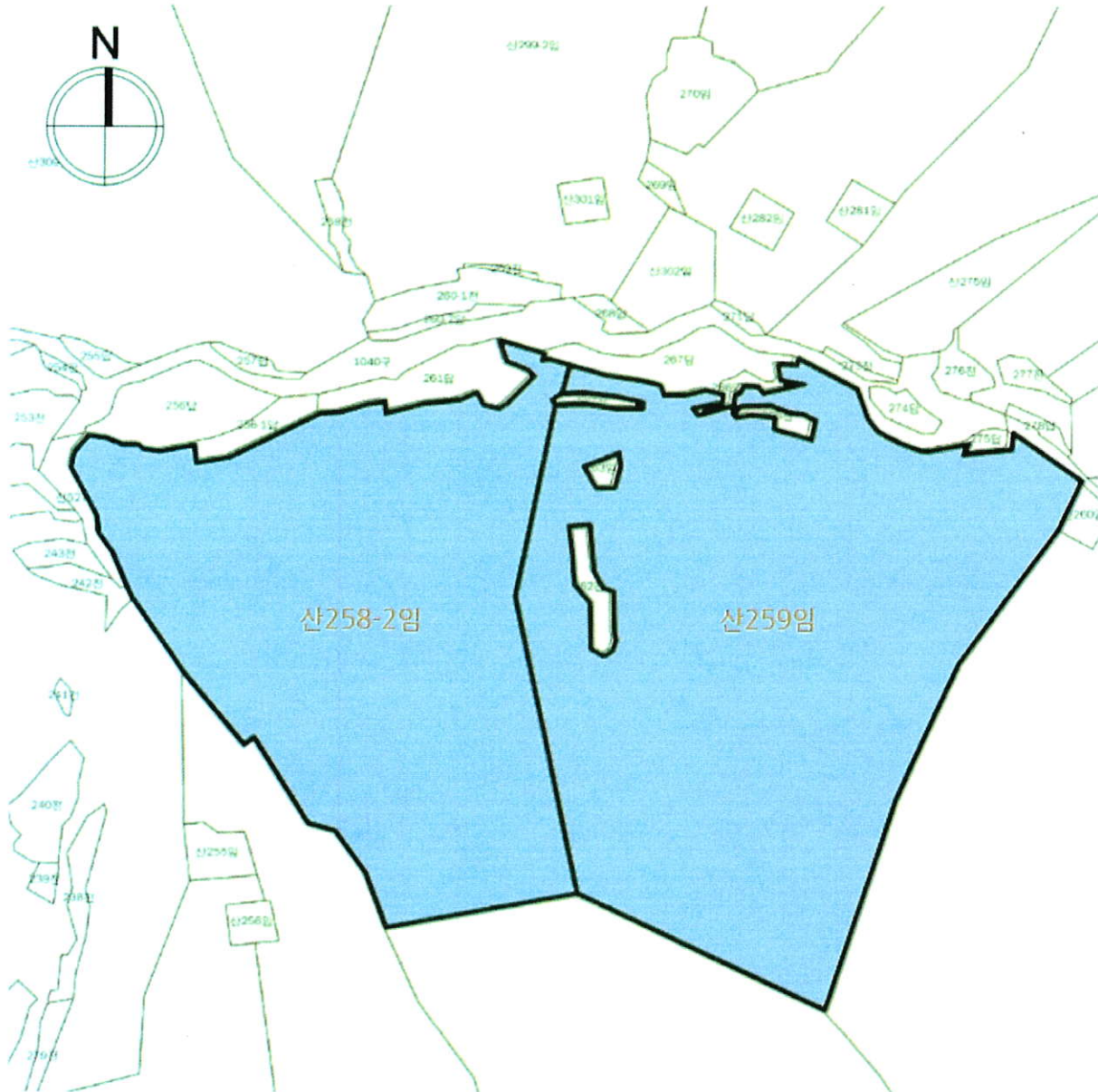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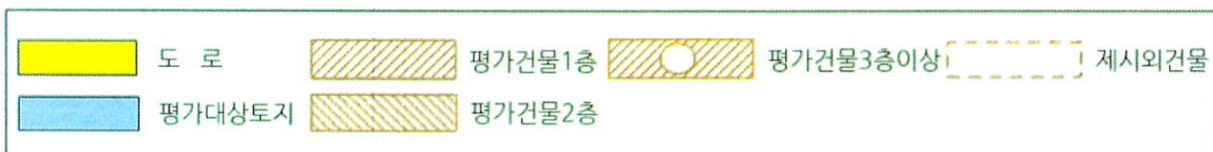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258-2외



지 적 개 황 도



*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고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 진 용 지



토지 기호 1 사진



토지 기호 2 사진